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
 - 경찰서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였으나 범인 특징이 어려워 사건 접수가 안됨.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알지도 못하는 전화번호로 오래전에 발생한 범위반 사실에 의해 과태료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청함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2023년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은 대구이고, 2016년에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한 적이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광고물을 본인이 직접 게시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상황임.

□ 사실관계

- 2016년 2월경 양천구 관내 중고차 최고가 매입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적발·수거되었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통신조회 후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.
- 민원인은 그동안 실제 거주지가 대구이고 해당 전화번호는 처음 보는 것인바 명의도용을 주장하며,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오래전에 발생한 일로 사건 접수가 어렵다고 함.

□ 관계 법령 등

-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및 제20조(과태료)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임.

□ 판단 및 결론

- 병원진료기록, 진단서, 일용근로 노무제공내역서, 채무확인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지 등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및 민원인이 전화번호 도용으로 신고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서에 유선으로 확인하였다는 해당부서 직원 면담 조사에 의하면 민원인이 실제 거주해온 지역이 대구였다는 민원인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점,
- 나아가 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및 독촉 고지 송달내역 및 직원 면담 조사에 의하면 당초 과태료 부과처분은 등기송달이 되지 못하여 공시송달 되었다는 것이고, 그 후 일반 우편으로 독촉 고지 및 체납고지 발송되어 오다가 과태료 부과 이후 7년여가 경과된 점,
- 상기와 같은 본 건 과태료 부과처분, 송달 및 그 집행 등 관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본 건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.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(의견표명)

□ 민원 제목 :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 강좌 신청 방식 개선 요청

□ 신청 취지

-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 강좌 신청 방식 개선 요청
 -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 강좌 신청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접수를 시작하여 온라인 접수가 빠르게 마감 시 오프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하여 현행 방식 개선을 요청함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 강좌 신청을 위해 새벽4시부터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았으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접수를 시작하여 온라인 접수가 마감되어 등록하지 못하였음.
- 위와 같이 온·오프라인 동시접수를 할 경우 당연히 온라인 접수가 먼저 되어 오프라인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와서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봐야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.

□ 사실관계

- 6시 아침수영반, 아쿠아로빅반 등 23개 수영반 개설 운영중임.
- 그 중 13시 화·목·토 아쿠아로빅반과 토 아쿠아로빅B반은 어르신 참여인원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인터넷과 현장접수 인원을 각각 배정하여 접수하고 있으나, 나머지 21개 수영강좌는 인원 배정 없이 동시 접수하고 있음.

□ 판단 및 결론

- 어르신들의 경우 아쿠아로빅과정 뿐만 아니라 센터가 운영중인 각종 수영 과정에도 참여하거나 참여의사가 있는 분이 많이 있음.
- 문제를 제기한 어르신의 경우 기존 자유수영반에서 수영을 장기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잠시 쉬었다가 재등록 하려고 번호표 까지 받았다가 등록 못한 경우임.
- 위와 같이 나이든 어르신의 경우 인터넷에 익숙치 않아 온·오프라인으로 접수받을 경우 등록자체가 아예 불가능 할 수도 있게 됨으로 현행 온·오프라인 동시 접수 방식을 어르신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.
- 문화체육과에서는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운영중인 각종 수영프로그램의 온·오프라인 동시 접수 방식을 나이든 어르신들께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바람.